

제316회 정례회

2012. 11. 26(월)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2일

나. 회부일자 : 2012년 11월 7일

3. 제안이유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
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위원회 및 각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인원이 적어 분야별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개의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위원 구성을 15명에서 30명으로
조정 (안 제14조)

나. 공공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를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경우, 심사대상 시설물의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
기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11명 이내로 조정 (안 제18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소위원회 운영 시 안전이 많을 경우 분야별 최소인원이 초과하여

위원회 성원이 어려움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수를 상향조정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 조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간결하게 제출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